

보 도 자 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사건

[2016헌마25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 외교부장관과 일본국 외무대신이 2015. 12. 28. 공동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절차와 형식 및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고, 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되었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사망한 청구인들을 제외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사망한 청구인들에 대한 심판절차는 각 청구인들의 사망으로 종료하였다. [심판절차종료]



2019. 12. 27.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자녀 또는 사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자녀이다.
- 청구인들은, 2015. 12. 28.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합의의 내용이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3. 27. 위와 같은 합의 발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한민국 외교부장관과 일본국(이하 ‘일본’이라 한다) 외무대신이 2015. 12. 28. 공동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내용’(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1. 청구인 강○○, 길□□, 김◇◇, 김■■■, 박▣▣, 박▤▤, 박▥▥, 이▧▧, 이▨▨(1928. 9. 10.생), 이★★(1930. 3. 4.생), 이▩▩, 정◎◎, 하●●, 함●●, 남◆◆, 홍○●, 김●●, 서▫▫, 송▬▬, 양▭▭, 왕▮▮, 이△△, 이▲▲, 임▽▽, 임▼▼, 임☆☆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한 심판절차는 [별지3] 기재와 같이 종료되었다.

□ 이유의 요지

● 조약과 비구속적 합의의 구분

- 조약과 비구속적 합의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합의의 명칭, 합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국내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같은 형식적 측면 외에도 합의의 과정과 내용·표현에 비추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당사자의 의도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적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창설하는지 여부 등 실체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비구속

적 합의의 경우, 그로 인하여 국민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이 사건 합의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일반적인 조약이 서면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 합의는 구두 형식의 합의이고, 표제로 대한민국은 ‘기자회견’, 일본은 ‘기자발표(記者發表)’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일반적 조약의 표제와는 다른 명칭을 붙였으며, 구두 발표의 표현과 홈페이지에 게재된 발표문의 표현조차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였다. 또한 이 사건 합의는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의 동의 등 헌법상의 조약체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이 사건 합의의 내용상, 한·일 양국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의 창설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 사건 합의 중 일본 총리대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시하는 부분의 경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가 드러나지 않아 법적 의미를 확정하기 어렵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과 일본 정부의 출연에 관한 부분은, ‘강구한다’, ‘하기로 한다’, ‘협력한다’와 같은 표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무 이행의 시기·방법, 불이행의 책임이 정해지지 않은 추상적·선언적 내용으로서, ‘해야 한다’라는 법적 의무를 지시하는 표현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주한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견해 표명 부분도, ‘일본 정부의 우려를 인지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만 할 뿐, ‘적절한 해결’의 의미나 방법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해결시기 및 미이행에 따르는 책임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국의 권리·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볼 내용이 없다. 그 밖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에 관한 한·일 양국의 언급은, 근본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한·일 양국의 법적 관계 창설에 관한 의도가 명백히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의 절차와 형식에 있어서나,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인 권리·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되었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소송절차종료선언

- 일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에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은 심판절차의 수계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망한 청구인들에 대한 심판절차는 각 청구인들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